

미국의 문화재 관리 현황과 과제

강 봉 원*

목 차

- I. 미국의 '문화재' 정의 및 관리의 배경
 - II. 미국의 문화재 관리 대상의 범위
 - III. 미국에서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일반인과의 연계
 - IV. 미국 문화재 관리의 애로점과 과제
- References Cited

I. 미국의 '문화재' 정의 및 관리의 배경

미국에서의 문화재는 영어로 보통 Cultural Property라고 불리는데 1970년대 초 이후부터는 Cultural Resource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Cultural Resource의 기본 정의는 보통 직접적인 인간 행위의 결과로써 남겨져 있는 일체의 고고학적 유적, 유물과 아울러 자연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Fowler 1982:1). 특히, 자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된 것들로써, 영어로 'ecofacts'라고 불리지는 꽃가루, 흙, 나무, 숯, 조개 껍질, 그리고 동물의 뼈 등도 포함이 된다(Binford 1964:432-434). 이러한 문화재, 즉 여기에서는 협의의 고고학 및 역사적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들은 한정된 것이어서 누군가가 유물을 집어 가거나 유적지를 발굴하거나, 유적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거나, 주거지역을 조성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다면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문화재들은 기본적으로 파괴된다. 산업화 과정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가고 있는 문화재들을 발굴 조사와 복원을 통하여 아무리 보존을 잘한다고 해봐야 기본적으로 고유한 고고학 및 역사적 속성이 변형이 되어 다시 만들거나 재생 할 수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기본 성격을 다소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미국인들은 일찍이 19세기말부터 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자국민들의 과학적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땅이나 인디안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고고학적 유적지와 유물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 경희대학교 교수

왔다(Fowler 1982:5). 특히 인디안 및 여타 종족들의 궁극적인 안식처로 간주하고 있는 무덤들을 도굴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미국에서 문화재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를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19세기말부터 여러 가지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부터 시작이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은 1906년에 제정이 된 ‘골동품 법’(Antiquities Act)이다. 이 법은 “미 연방 정부에 의하여 소유, 혹은 통제되고 있는 땅에 놓여 있는 역사시대 혹은 선사시대의 고지(古址), 기념물,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의 유물”(historic or prehistoric ruin or monument, or any object of antiquity, situated on lands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Schiffer and Gumerman 1977:3)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후 미국에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취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고학 유적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이 아주 많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적지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써는 National Park Service(NPS), 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Forest Service(FS), Fish and Wildlife Service, Office of Archaeology and Historic Preservation (OAHP),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s(SHPO), Bureau of Reclamation, Bureau of Indian Affairs,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Defense, 및 각 주마다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예, Arizo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ADOT) 등등이 있고 아울러 여러 인디안 부족들과 주(州) 및 지방자치 단체 소속 문화재 관련 기관 등이 있다. 이들 모든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유적지들이 있을 만한 곳을 순찰하기도 하고 안내판을 내 걸거나 혹은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고고학적 유적지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자들대로 ‘전문 고고학자 학회’(Society of Professional Archaeologists), ‘미국 고고학회’(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남서부 고고학 연구 단체’(Southwestern Archaeological Research Group), ‘캘리포니아 고고학회’(Society for California Archaeology), ‘역사고고학회’(Society for Historical Archaeology) 등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국 내에 있는 각종의 문화재들을 보호 내지는 보존 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20세기초에 제정이 된 법령을 수정하고 보완을 계속하여 1966년 ‘국가 역사물 보존 법령’(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U.S. Code 1977i), 1971년에는 닉슨 대통령의 행정 명령 11593인 ‘문화 환경 보호 및 증진’(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the Cultural Environment)이 발동되었다. 1979년에는 ‘고고학적 자원 보호 법령’(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이 제정이 되어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공유지(公有地)와 인디안 소유의 땅에 있는 고고학 자료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위반 할 경우 아주 엄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1979년에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고고학적 자원 보호 법령’(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州)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법 아래 효력이 있는 규정, 규칙, 제한, 법령, 허가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고고학 자료들이 발굴, 이동, 판매, 구매, 교환, 수송 혹은 수수된 것을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교환하거나, 수송하거나, 받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혹은 해외 상업적 거래에서 팔거나, 구입하거나, 혹은 교환하도록 제의 할 수 없다.

No person may sell, purchase, exchange, transport, receive or offer to sell, purchase, or exchang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archaeological resources excavated, removed, sold, purchased, exchanged, transported or received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 rule, regulation, ordinance, or permit in effect under State or local law(ARPA Sec. 470ee[c]). [Munson et al. 1993:3]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즉, 이 법은 사유지(私有地)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법 자체가 비합헌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용하여 미국에서도 상업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에 의한 고고학 유적지들에 대한 파괴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유적지를 보호하는 데 많은 애를 먹고 있다. 위 법령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와 인디안 소유의 땅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지표채집, 발굴, 이전, 훼손, 혹은 유적의 형질 변경을 했을 경우 처벌 조항을 보면, 초범인 경우 10,000(약 900만원)불의 벌금이나 1년의 금고, 혹은 두 가지형을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고고학 유적지 보호법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써 미국의 오레건 주에 살고 있는 Jaqueline Hayden은 거버 저수지(Gerber Reservoir) 인근에서 지표 위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허가 없이 채집하다가 발각되어 기소되어 많은 벌금을 물었다.

위에서 언급한 법령의 제정과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고고학 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문화재 및 고고학 유적지들이 산업 활동, 도로 건설, 도시 개발, 농사, 그리고 채석 혹은 채굴 등으로 인하여 의식적 무의식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고고학자 McGimsey(1973)는 20세기 말 경에는 유럽, 중미(Mesoamerica), 그리고 북 아메리카 같은 곳에는 교란되지 않고 온전하게 있을 유적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미국의 고고학적 유적 파괴의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작금에 발생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II. 미국의 문화재 관리 대상의 범위

미국에서 문화재 관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하여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사 고고학적 분야이다. 미국의 역사고고학과 우리 나라의 역사고고학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역사 고고학에 대한 개념은 고고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제외하고 철기 시대 이후 대체로 기원전 2세기 경 부터 조선시대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고고학 연구에 중국의 사서나 한국의 사서를 이용 할 수 있는 시대를 전부 포함하고 있어 아주 광범위하다. 미국 역사고고학의 개념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오면서부터 거의 현금에 이르기까지 남겨 놓은 여러 가지 유적이나 유적지들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역사 초기, 유럽의 이주민들이 대서양을 건너 와 신대륙 즉 미국 각지에 건축하였던 집, 공장, 교회, 기타 공공 건물, 교량 등등이 유적의 범주에 들고 자물쇠, 담배 피우는 파이프, 향수병, 맥주병, 구두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도구, 쟁반, 각종의 깡통, 승마 할 때 쓰는 일체의 장비, 심지어는 말 발굽 등등이 문화재 관리의 범주에 든다. 여기에서 열거한 유물의 종류는 일부이고 실제 관리하고자 하는 유물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흥미로운 예의 하나로서 근래에 뉴욕의 맨하탄가에서 구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이 된 18세기 초엽에서 말기에 이르는 동안 조성이 되었을 흑인들의 공동묘지이다. 이 소위 미국의 역사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흑인들의 인골과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 여기에서 발견 된 유물의 수는 수만 점이 넘으며 종류로는 동전, 구슬, 접시 조각들, 장난감, 그리고 음식 찌꺼기 등이었다. 미국의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를 발굴하여 미국 초창기 노예로 끌려왔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형질적인 특징, 식생활, 영양상태, 질병 등과 일상생활의 모습, 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의 하나인 장례 의식 및 무덤 축조의 양식 등 여러 가지 조사를 마친 다음 이 곳을 “국립 역사 유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 을 하여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여 와서 살던 아시아인들이 남긴 유적, 유물조차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적지 않은 중국인 및 일본인들이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으로 건너왔 는 데, 이들이 남긴 물품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도자기, 아편을 피우던 기구, 도박과 관련된 것들, 의약 기구 등등조차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간주하지도 않을 이러한 하찮은 유물에 대해서 미국 고고학계 혹은 역사 고고학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관리하여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한국과 미국의 고고학 사이에 있는 유적 및 유물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한국의 고고학에 있어서 구석

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고고학적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누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고고학을 전공하면 이것은 마치 고고학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어도 이를 의미심장하게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한국 고고학의 주된 관심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혹은 삼국시대의 분묘 발굴 조사에만 지나치게 집중이 되고 있고 고려와 조선시대는 값비싼 도자기와 그림 등에만 관심이 편재되어 있다. 그 중에 약간의 고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도자기를 생산하던 요지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고고학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낙후되게 마련이고 한국의 고고학은 파행적 학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하루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미국 고고학의 경우와 같이 유적이거나 유물의 인식 대상에 대한 시간의 폭을 궁극적으로 넓게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알면 이미 때가 늦다”는 것이 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삼국시대의 유물이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귀중한 문화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싸구려로 팔아 넘기는 와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귀중한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이 되었다. 이제 우리들이 뒤늦게나마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 나라로 가져오려고 하는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예 영구히 되돌려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고학계에서 이러한 점을 잘 명심하여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위에 흔하게 널려있는 하찮은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서 일단 보관, 정리하여 두는 것이 미래 한국 고고학 발전과 한국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미국에서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일반인과의 연계

미국에서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의 개별 주마다 공공기관, 주립대학, 혹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1회 혹은 2회씩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고고학적 행사이다. 이 행사는 평소에 고고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는 고고학에 좀 더 심취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고고학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고고학이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주며 왜 미국 혹은 세계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행사를 ‘고고학 인식의 주’(Archaeology Awareness Week)라고 명명하여 1983년 애리조나주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후 그 중요성과 효과가 인정되어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 행사 기간 중에는 각종 유물의 전시를 비롯하여 시굴갱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직접 시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고 토기, 석기, 혹은 기타 장신구 등을 제

작하는 시범을 보여 준다. 또 참가한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직접 여러가지 유물들을 만들어 보게 하기도 하고 중요한 유적지나 발굴 현장을 견학시키기도 한다. 사우스 다코다(South Dakota) 주의 경우에는 종으로 홍적세(Pleistocene)에 존재하였던 큰 코끼리(mastodon)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창을 던져 이를 맞추는 경기를 하기도 하는 데 주(州)의 자연환경과 인디안들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 중의 하나이다. 애리조나 주와 버어지니아 주의 경우 근래에는 이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100,000명이 넘어 일주일 동안 실시하던 행사를 연장하여 한달 동안이나 계속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고고학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고학이 무엇인가를 다소나마 이해시켜 주도록 하여 이 지식을 배경으로 유적지의 도굴이나 혹은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반인들이 이 행사를 통하여 고고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되어 고고학적 발굴, 문화재의 관리, 해석 등 고고학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들이 지불한 세금을 가지고 수행이 되는 고고학 활동을 궁극적으로 지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과거에 관하여 좀 더 알려고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배기동 교수의 주관하에 1996년 이래 매년 5월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미국의 '고고학 인식의 주'와 유사한 구석기 문화 행사가 거행이 되어 각급 학교 학생들과 아주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끝이 났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행사가 각 지방 박물관의 주관하에 실시 되어 가고 있는 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체계적인 행사로 변모하여 우리 한국의 고고학에서도 전문학자들과 일반인들 간의 거리를 다소나마 좁혀서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V. 미국 문화재 관리의 애로점과 과제

미국의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최근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은 유럽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신대륙에 살던 원주민들, 즉 인디안들이 남겨 놓은 문화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하고 있는 유물과 인골의 발굴조사, 보존처리, 그리고 관리의 문제이다. 과거 미국 고고학계에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저지 없이 관례대로 인디안들의 문화유적지를 발굴 조사하여 정리하여 전시도하고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이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심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즉, 인디안들이 유로-아메리칸(Euro-American)들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조상의 무덤과 신성시하는 종교적인 장소 등을 학술적인 조사라는 명분하에서 발굴조사하는 데에 심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인디안들이 이와같은 주장을 하며 나선 것은 우선 보수적인 인디안들이 이민족(異民族)들인 유로-아메리칸(Euro-American)들이 인디안 조상들의 무덤과 신성한 곳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불만스러웠으며 또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자기 조상들의 문화에 대해 그다지 존경심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인디안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인디안들은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인 탐구의 과정들이 그들의 문화 유산, 가치관들, 그리고 조상들의 잔존물에 대해 모욕이고 또 파괴라고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인디안들은 “미국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률”(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P.L. 101-601; Stat. 3048; 25 U.S.C. 3001-13)(NAGPRA)의 제정을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Walker 1992:6). 이 법은 1990년 11월 16일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Bush)의 재가를 받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이 법은 “문화적 소속”과 “문화적 물품”(cultural items: 장례식에 사용하는 물품, 신성한 물건,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등에 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 ② 연방정부의 땅에서 유골이나 문화적 물품을 발굴 하기 전에 적절한 인디안 부족들에게 의 무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한다.
- ③ 연방정부의 땅에서 발견된 인디안들의 유골이나 문화재들은 인디안들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땅이나 인디안 땅에서 발견된 인디안들의 유골을 사고 파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이다.
- ④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모든 연방 정부의 문화재 기관과 모든 박물관 (스미스소니안 박물관은 예외)들은 유골과 관련된 장례품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문화적으로 소속된 인디안 종족들에게 그 목록과 다른 문화재 수집품들에 대한 요약문을 제공해 줘야 한다.
- ⑤ 유골과 관련된 장례품(즉, 부장품)들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인디안 종족이 요구하면 모두 반환해야 한다.
- ⑥ 다른 종류의 물품들의 반환은 원래 그 물건이 소속되어 있는 인디안 그룹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취해 온 것인지를 근거로 결정한다.
- ⑦ 또 이 법은 박물관들이 유물 목록과 수집된 유물의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고 인디안 종족들과 하와이 원주민 조직체들이 이들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내무부 안에 승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다[Kintigh 1991:3].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인디안들의 분묘를 학술상의 목적으로 발굴이나 이장을 하려고 계획을 할 때 사전에 발굴하고자 하는 인디안들 무덤 주인들의 알고 있거나 확인 할 수 있는 직계 후손, 적절한 인디안 종족, 혹은 하와이 원주민 단체들로부터 문서로 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미국 연방 정부의 땅에서 우연히 인골이 발견 될 경우에도 즉시 인디안 종족들이나 하와이 원주민 조직들에게 이 사실을 통고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발굴된 유골(human remains)과 부장품(cultural items)들을 인디안들이 처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고고학계에서는 과거 인디언들이 남겨 놓았던 무덤, 주거지, 패총, 혹은 기타 고고학적 유적지의 발굴과 그곳에서 출토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조사하면서 고고학 학습을 하여 왔고 미국 고고학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미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이제까지 발굴하였던 유골 및 유물들을 상당 부분 인디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인디언들이 이들을 다시 땅 속에 묻으려고 하니 이제까지 쌓아 놓았던 모든 고고학의 학문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 장래 미국 고고학의 실습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게 되어 과학적 탐구로서의 미국 고고학이 위기에 처해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최초로 이 법률 제정의 시안이 나올 때만 하여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인간 유해 및 고고학 유물의 과학적 탐구에 대한 중요성의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서명 운동까지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이 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 NAGPRA의 법률이 제정이 된 직후에는 미국 고고학자들과 원주민들 사이는 상당히 거북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각급 연방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의 문화 기관, 대학박물관, 미국 고고학회(The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및 기타의 학술 단체들도 이 법의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바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1. NAGPRA의 긍정적인 측면 : 미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 종족들을 근간으로 형성이 된 미국인들 고고학자들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조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무덤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인디언들의 직계 후손이 아닌 유로-아메리칸(Euro-American)들이 인디언 조상들의 무덤을 애당초 발굴하는 그 자체가 인디언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고고학자들의 무책임한 학문적인 태도가 많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많은 미국인 고고학자들은 인디언들의 문화가 정체하여 있었고 저급한 야만(savages) 단계로 머물러 있었으며 인디언들이 곳곳에 남겨 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흙더미(earthworks)들은 인디언이 아닌 다른 종족들에 의해 건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 등이다. 심지어 신고고학자들 까지도 미국의 인디언들을 인디언들의 역사나 관심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Hodder 1991:167-168). 또 미국에서는 인디언들의 유골 1구당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를 거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유골을 구하는 것이 아주 힘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매매의 주요 대상이 바로 인디언들의 유골인 것이다. 형질 인류학 실험실에서 자기 조상들의 유골이 학생들의 실험 및 교육 대상이 되는 것에 마음 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반면, 미국인들은 아직도 월남전에서 사망한 미군들과 심지어는 한국전에서 사망한 미군들의 유해를 발굴하거나 회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자기 조상들 혹은 자기 백인 종족들의 유해의 처리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정작 미국의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의 유해를 발굴해 오면서 이와 같은 존경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디안들을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자극을 시켰다. 이제 이 “미국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률”(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 미국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다소나마 줄이고 미국 인디안들의 자존심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가능하면 원주민들을 고고학 발굴 조사 혹은 일반적인 인디안 문화 연구에 참여시켜서 함께 조사하는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 고고학자들 혹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과거 인디안 문화 연구를 함에 있어 학생, 혹은 초청 강사의 자격으로 인디안들을 참여시켜서 민족지학과 구전(ethnography and oral traditions), 민족지 역사 및 공문서 연구(ethnohistory and archival studies)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고고학 연구 프로그램에 원주민들을 참여시켜 고고학을 발전시켜려 하는 노력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데, 그 일례가 1993년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에서 실시한 여름 고고학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많은 유럽계의 미국인 교수,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아울러 미국 원주민들도 참석하여 인디안 문화에 대하여 쌍방간의 견해나 입장 등에 관하여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여름 고고학 프로그램이 끝나 갈 무렵 한 대화에서 인디안 한 명이 말하기를 “여러분들(고고학자들)이 이제야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는군요(You[archaeologists] are finally listening to us)”(Barrios 1993:7)라고 하여 인디안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견해가 고고학자들 및 문화 인류학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 개별 주에서 실시하는 “고고학 인식의 주” 등의 행사에서 반드시 인디안들을 초청하여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 그들이 비밀리에 실시하는 제사를 공개적으로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울러 바구니, 직물, 혹은 장신구 등을 인디안들이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유럽계 미국인들이 인디안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여러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을 문화적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이다.

2. 부정적인 측면 : “미국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률”(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노출되었다. 그 중에 한가지는 이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인디안들의 자세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미국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연구를 진행함에 도굴이 되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 도굴범과 중간상인들이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형을 구형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므로 회수한 유

물들은 도굴된 지역에 있는 지방 박물관에 귀속케하여 보존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전시가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안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다. 즉, 인디안들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NAGPRA의 법을 들고 나오면서 도굴된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묻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이나 지역 박물관과 연구소에서는 이들을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인디안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모두 인디안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인디안들의 문화적인 특수성과 조상 숭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다소 지나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에 몇몇 미국 원주민들이 재장례(再葬禮)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만약 도굴꾼들이 고고학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없이 [유물들] '파거나', '살'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유적지가 파괴 될 것이다.

The current emphasis on reburial, however, by some Native Americans may lead to an unintended consequence: if looters can "dig" or "sell" with less fear of being apprehended or convicted of archaeology crimes, more Native American sites will be destroyed[Munson et al. 1993:4].

“미국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률” (NAGPRA) 제정과 시행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을 한가지 더 보기로 하자. 본인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휘닉스에 있는 Soil Systems Incorporated라는 고고학 연구소에서 약 2년간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토기 분석가로 일한 적이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약 300만 불의 용역 조사비용을 가지고 1988년 10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연인원 75,000명을 동원하여 휘닉스 시에 있는 푸에블로 그란데(Pueblo Grande)라고 불려지고 있는 인디안 유적지를 발굴하였다. 여기에는 호호캄(Hohokam)이라고 이름지어진 인디안들이 대략 기원후 1150년경부터 1400년경까지 약 250년 동안 이곳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유적지는 템피시(Tempe)에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서북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휘닉스(Phoenix)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지 바로 위에 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됨에 따라 도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필자도 약 2개월간 현장에서 발굴 조사에 참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연구소 내에서 토기 분석하는 것을 담당하였다.

이 푸에블로 그란데(Pueblo Grande) 유적지의 크기는 대략 2.5평방 킬로미터 정도이며 이 유적지에서는 120채의 수혈 주거지, 88채의 흙벽돌 집(pueblo), 800기의 무덤, 약 2000점의 완전한 토기 및 복원이 가능한 토기, 350,000점 이상의 토기 파편 10,000여 개의 돌을 갈아

서 만든 크고 작은 구슬, 900개의 갈 돌봉(manos), 475개의 갈 돌판(matates), 250개의 흑요 석제 들화살촉, 20,000여 점의 조개 장식품 및 조각품 등이 발굴 조사되었다(Abbott et al. 1994; Mitchell 1994).

이러한 여러 가지 유물과 유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디안들 즉 호호캄인들의 무덤과 그 속에서 나온 유골과 화장물 하였을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는 뼈의 조각 등과 각종의 유물이었다. 이 연구소와 호호캄 부족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현금의 인디안들과는 대체로 발굴조사에 합의도 되기도 하였고 인골도 형질인류학자들이 기본적인 조사는 연구소 내에 혹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소에서 뼈의 화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인골들 중의 일부를 콜로라도에 있는 형질인류학 실험실로 보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디안들의 주장은 '애리조나에서도 인골의 화학적 검사를 해도 되는 데 왜 구태여 콜로라도까지 보내느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유골 일부를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화가 난 인디안들은 푸에블로 그란데 고고학 유적지에서 출토한 모든 유골과 유물들을 회수하여서 그들의 의식(儀式)에 맞춰 이들을 다시 다른 곳에 묻겠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이 연구소에서는 엄청난 예산과 오랜 기간 동안의 발굴조사로 수집한 거의 모든 유골과 유물들을 인디안들에게 반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다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유물, 즉 토기나 석기 등등에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연구소의 유물 고유번호를 모두 달아 두고 실측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후 인디안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런데 얼마후 휘닉스시의 동북쪽에 있는 위성 도시인 스카츠데일(Scottsdale)이라고 불리는 곳에 골동품을 파는 곳이 있는 데 여기에서 Soil System Inc.에서 인디안들이 회수하여 간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결국 인디안들이 이 연구소로부터 자기들 조상들의 유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하여 간 유물들을 다시 묻겠다고 약속을 저버리고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골동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단 고고학자들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우리의 손으로 발굴 조사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와 같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의 분묘를 발굴하고 여기에서 발굴된 인골의 형질인류학적 조사를 위하여 종종 일본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이 유골들이 우리 조상들의 것이고 또 우리가 직접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유로-아메리칸과 인디안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종적인 문제는 없다. 한국의 고고학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것은 고고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아주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률”(NAGPRA)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하여 미국의 고고학자들은 과거와 같이 임의로 유적지를 발굴 조사하는 것이 힘이 들게 되었다. 미국에서 문화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작업을 실시하

려고 할 때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고학 발굴 조사에 인디안들을 참여시켜 함께 일해야 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지만 과거를 좀 더 잘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고고학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References Cited

Abbott, David R., Douglas R. Mitchell, and J.A. Merewether

1994 Chronology. In *Feature Descriptions, Chronology, and Site Structure*, edited by Douglas R. Mitchell, pp. 157 - 253. The Pueblo Grande Project, Volume 2: Soil Systems Publications in Archaeology No. 20. Phoenix, Arizona.

Barrios, Philip

1993 Native Americans and Archaeologists Working Together: Toward Common Goals in California. *SAA Bulletin* 11(3):6-7.

Binford, Lewis R.

1964 A Consideration of Archaeological Research Design. *American Antiquity* 29:425-441.

Fowler, Don D.

1982 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In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5, edited by Michael B. Schiffer, pp. 1-50. Academic Press, New York.

Hodder, Ian

1991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Kintigh, Keith W.

1991 Surveying the Field: Repatriation We Can Live With. *SAA Bulletin* 9(1):2-3.

McGimsey, C. R., III

1973 *Archaeology and Archaeological Resources*.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Washington, D.C.

Mitchell, Douglas R., Editor

1994 *An Analysis of Classic Period Mortuary Patterns*. The Pueblo Grande Project,
Volume 7: Soil Systems Publications in Archaeology No. 20. Phoenix, Arizona.

Munson, Cheryl, Marjorie Melvin Jones, and Robert Fry

1993 General Electric Mound and ARPA: Current Status. *SAA Bulletin* 11(3):3-4.

Schiffer, Michael B., and George J. Gumerman(editors)

1977 *Conservation Archaeology: A Guide for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tudies*.
Academic Press, New York.

Walker, Phillip

1992 Updat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ve Graves Protection Act. *SAA
Bulletin* 10(1):6.